휘 보

연구회 동정

【95호 1차 편집회의】
일　　시 :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16:00~17:00
장　　소 : 비대면 온라인 화상 회의 (ZOOM)
회의 주제 : 『인문연구』 95호 투고 논문 심사자 선정 및 일정 논의

【95호 2차 편집회의】
일　　시 :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16:00~17:00
장　　소 : 비대면 온라인 화상 회의 (ZOOM)
회의 주제 : 『인문연구』 95호 게재 논문 선정 및 『인문연구』 출판 논의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 소원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2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가)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의뢰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제3조(소집)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은 연구소 소장이 위촉하고 연구소운영위원의 인준을 받는다.
제5조(위원의 임기) 편집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논문심사 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며, 논문 1편 당 3명의 심사 위원을 배정한다.
제2조 심사는 논제의 타당성, 주제의 적절성, 논문의 독창성, 논리의 정연성, 형식과 체제, 참고문헌의 활용도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서의 평가항목에 따라 자세히 명시하고 이를 등급을 매겨 평가 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가) "3명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게재 우선 순위에 따라 총 투고 논문의 70% 미만을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30% 이상을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는 규정을 준수한다.

나) 단 게재률을 초과할 경우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총점으로 게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게재 가'는 6점, '수정 후 게재'는 5점, '게재 불가'는 0점으로 처리한다.

다)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게재 가' 판정을 받을 경우, '무수정 게재'를 할 수 있다.

라) 심사위원 3명 중 2명으로부터 '게재 가' 판정을 받고 1명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을 경우, '무수정 게재'를 할 수 있다.

마) 심사위원 3명 중 1명으로부터 '게재' 판정과 2명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를 할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를 받을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보완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위원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바) 심사위원 3명 중 1명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게재 불가'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에서 게재가 확정될 경우, 다음호에 게재한다.

사) 심사위원 3명 중 2명으로부터 '게재 불가'를 받을 경우 '게재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아) 전국학술대회, 또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할 수 있다.

자) 수록 예정 논문 수가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게재 가' 판정을 받았더라도 심사 결과 등급 및 총점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순서를 결정하여 '게재 보류'를 판정할 수 있다.

제4조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논문을 결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 '논문 투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원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논문의 표절 및 중복 투고 방지) 투고된 논문이 만약 표절한 논문이거나 중복 투고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인문연구』 논문 투고 규정

1. 논문 투고자 자격

본 연구소 학술지의 논문 투고 자격은 본 연구소 소원과 타 대학교에 소속된 모든 인문학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단, 인문학과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투고 범위

본 연구소 학술지의 논문은 인문학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학회학술지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 의견결정에 따라 반려될 수 있다.)

3. 논문 제출방법

1) 원고제출
혼글로 작성한 파일을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한다.

2) 마감일자
상반기 - 1월 31일까지
중반기 - 4월 30일까지
7월 31일까지
하반기 - 10월 31일까지

3) 발행일자
상반기 - 3월 31일
중반기 - 6월 30일
9월 30일
하반기 - 12월 31일

4) 제 출 처: 인문과학연구소 홈페이지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
(http:// yuhumanities.jams.or.kr)

5) 발간횟수 변경: 2018년부터 연 3회에서 연 4회로 발간회수를 늘린다. 2018

년도부터는 3, 6월, 9월, 12월에 발간하기로 한다.

4. 저작권 활용 동의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저자에게 있으나,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통하여 인문연구에 귀속된다.

5. 논문체제

1) 원고분량

혼글로 작성한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경우, 필자는 초과 게재료를 지불해야 한다.

2) 논문작성 순서

논문 제목, 부제목, 필자명(학교명), 목차, 국문초록(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 주제어), 필자인적사항(소속, 주소, 전화번호, e-mail)의 순으로 작성한다. 단, 2인 이상의 공동 저작일 경우 별도의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순차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등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교신저자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를 밝혀야 한다.

3) 초록은 영어로 해야 한다.

4) 모양/편집용지

① 용지종류: A4

② 용지여백: 위아래 51, 왼쪽오른쪽 55,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5) 모양/글자모양:

① 크기: 논문제목 14, 부제목 11, 필자명 11, 각주 9, 소속학교 9, 인용문 9.5

② 글꼴: 논문제목(HY견명조), 저자명, 주제어(HY중고딕), 국문초록, 본문, 인용문, 각주, 참고문헌(HY신명조)
단, 영문 글꼴은 나눔명조

③ 줄 간격: 본문 160%, 참고문헌 150%

④ 장평: 95%, 자간 -7%

6) 본문모양

글자크기 10.5, 들여쓰기 여백 2칸(1字), 줄 간격 160%, 양쪽혼합 정렬

7) 도표 및 그림

표 1) 본문의 크기

폭	쪽 당 줄 수	줄 간격
11cm(4.33 inch) 16.2cm (6.38 inch)	62 columns 34 lines	150%

8) 번호 및 부호

① 번호

대항목 번호: 1, 2, 3, ... (글자크기 12, 윤고딕 120)
중항목 번호: 1), 2), 3), ... (글자크기 11, 윤고딕 110)
소항목 번호: (1), (2), (3), ... (글자크기 10.5 HY신명조딕)

② 부호

본문 중 인용부호: "…"
재인용 또는 강조: '…'
단행본·문헌·신문잡지의 제목: 『 』
논문·기사·작품의 제목: 「 」
인용시 필자의 중략: …

9) 예문 및 인용문

① 문단을 나누어 별도의 문장으로 인용할 때는 " "를 붙이지 않으며, 위아래로 본문과 1줄을 띔(글자크기 9.5, 왼쪽 13pt, 줄 간격 160%, 양쪽혼합).
② 예문 및 인용문의 출처는 필자의 편의에 따라 각주로 달거나, ( )안에 넣는다.
③ '전략'·'중략'·'후략' 등의 말줄임표는 '……'으로 표기하며, 강조는 필자의 편의에 따라 굵은체로 하거나 밑줄을 긋는다.
④ 각주 안에서의 인용도 위의 원칙에 따른다.

10) 각주

각 쪽 밑에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글자크기 9, 내어 쓰기 10 pt, 줄 간격 130%)
논문의 모든 각주는 외각주를 원칙으로 한다.
논저의 표기 순서는 참고문헌 규정에 따른다.

※ 인용한 논저가 중복될 경우

① 동양어로 된 논저

바로 앞에 나온 논저는 '위의 책', '위의 논문' 또는 '같은 책', '같은 논문'으로 표기한다. 바로 앞에 나온 논저가 아니면 '앞의 책', '앞의 논문'으로 표기한다.

② 서양어로 된 논저

논문일 경우는 'Ibid' 또는 'op. cit'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같은 필자저자의 논저가 여럿 나올 경우, 처음을 제외하고 논저의 제목만 표기한다. 논문일 경우에도 게재지를 생략한다.

11) 참고문헌

본문 뒤에 2줄을 떼고 이어 씀(글자크기 12, 가운데 정렬, 윤고딕 120)
내용: 글자모양(한글: 윤고딕 110, 영문: 윤고딕 110), 크기 9pt, 장평 95%,
자간 -7%, 줄간격 150%, 두 번째 줄부터 (내어 쓰기 40pt, 양쪽 혼합)
문헌은 1. 기본 자료 2. 논문 3. 단행본으로 나누어 배열하고, 1·2·3은 모두 국문, 한문, 영문 순으로 배열하며, 각 언어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 동양어로 된 논저인 경우

① 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발행학회, 『게재지명』 권수 호수, 출판연도,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논문은 「 」, 게재지는 『 』 안에 표기한다.
·게재지의 '권'·'호'·'집' 등은 '제5권 제3호', '제1집'으로 표기한다.
·페이지의 표기는 한 페이지일 경우 'p.', 여러 페이지일 경우 'pp.'를 붙여 표기한다. 이 때 'p.'와 'pp.'과 숫자 사이는 한 칸 띄운다. 학술지나 단행본에 실려 있는 논문의 경우, 각주에서는 인용한 페이지를 표기하고, 참고문헌 리스트에는 해당 논문의 시작페이지와 끝페이지를 'pp. 18-45.'와 같이 표기한다.

예)

정수동, 「현대 국어 '가다' 동사의 다의성」, 언어과학회, 『언어과학』 제10집, 1998, pp. 55-75.
박성진, 「일제하 인종주의의 특성과 적용 형태」, 한국근대사연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집, 1996, pp. 65-70.

② 저서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번역서인 경우, 저자명, 번역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서명은 『 』로 표기한다.

예)

루카치 지음, 박정호·조만영 옮김, 『역사와 계급의식』, 거름, 1986, p. 100.
山口瑞鳳, 『吐蕃王國成立史硏究』, 東京: 岩波書店, 1984.

※ 서양어로 된 논저인 경우

① 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저널명, 권수, 호수, 발행처, 출판연도,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논문은 " ", 저널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권수는 Vol.을 붙이지 않고, 아리비아 숫자만 표기한다.
·권수와 호수가 같이 나오는 경우 ' - '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페이지의 표기는 'pp.'를 붙여 표기한다. 학술지나 단행본에 실려 있는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의 시작페이지와 끝페이지를 'pp. 18-45.'와 같이 표기한다.

예)

Langacker, R. W., "Language and Logic", *Cognitive Linguistics* 1-1, 1990, pp. 101-150.

Long, M. H.,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W. Ritch & T. Bell (Eds.),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ondon: Academic Press, 1998, pp. 401-415.

② 저서
·저자명, 서명, 출판지역, 출판사, 출판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Lakoff, G. *Linguistic Gestalts*, CLS 13, 1977.

Lakoff, G.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New York: Routledge, 1990.

12) 주제어(keyword)
검색을 위한 것으로 논문 내에 사용된 중심 어휘 5~10개 정도를 한국어와 영어로 (영어 이외 초록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로) 동시에 작성한다. 영문초록은 편집본을 기준으로 제목을 포함하여 1매를 넘지 않는다.

13) 외국어 논문의 경우, 외국어 논문의 통상적인 논문 작성법에 따른다.

14) 기타 사항은 인문과학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http://human.yu.ac.kr)

인문과학연구소 연구 윤리 규정

제1조 연구의 정직성에 관한 규정

1) 본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의 기본 설계, 각종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 등 개별 혹은 단체로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2) 본 연구소는 연구 수행 및 연구물의 출판 과정에서 자료의 날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중복 투고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심각한 학술적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제2조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

본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한다.

1) 표절 행위: 다음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 표절 행위로 규정함.
   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②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③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④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을 가공하는 자기표절 행위
2)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3)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예우 차원에서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연구의 기여도와 일치하지 않은 순서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및 기여가 있는 연구자의 이름을 누락시키는 행위
4)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거나 이중 출판하는 행위

제3조 편집위원의 윤리에 관한 규정

1)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품성을 아울러 갖춘 심사위원을 엄정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윤리에 관한 규정

1)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개인의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이 게재된 연구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논문의 내

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1) 심사 중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2) 이미 게재된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소장)이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는 치밀한 조사활동을 거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부정행위 제보자 및 피제소자에 관한 규정

1) 본 연구소 회원은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연구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 연구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3)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부정행위로 확정되기 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연구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연구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규정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연구자의 회원 제명 및 논문투고 금지.
2)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3) 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연구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4)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제9조 윤리규정 시행 지침

1) 본 연구소의 신입회원은 이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하며, 기존회원은 본 규정의 발효와 함께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연구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며, 기존회원은 추가 서약 없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 1)-2)항과는 별도로 본 연구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논문투고신청서의 해당란에 투고 논문이 본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음을 서약해야 한다.
4) 본 윤리규정은 2007년 12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인문연구』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에게 시상하는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상〉(이하 학술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시기) 학술상은 본 연구소의 학술대회 때 수여한다.

제3조(심사대상)

1. 학술상 심사대상 연구물은 최근 1년 이내 『인문연구』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다.
2. 선정 대상에서 특집 논문은 2중 수혜가 될 수 있음으로 제외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1. 학술상을 시상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연구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위원)

1. 위원은 편집위원 중 5인 이상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편집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위원이 수상자 후보에 추천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추가로 위촉한다.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3. 수상자가 결정되면 소장의 승인을 얻어 시상한다.

제8조(시상) 학술상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선정되면 소장이 상패와 부상으로 이를 시상한다.

제9조(규정개정) 학술상 규정은 위원회의 전체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12월 30일부터 실시한다.

편집위원

위원장　주형일(영남대 언론정보학과)

위　원　김종국(경인교대 윤리교육과)
나공수(영남대 일어일문학과)
류준형(영남대 역사학과)
손미란(동국대 의사소통교육부)
안치운(호서대 디지털문화학부)
이상신(아주대 국어국문학과)
이상우(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이영옥(전남대 역사교육학과)
이주봉(군산대 미디어문화학과)
이진남(강원대 철학과)
이철우(영남대 국어국문학과)
장문석(서울대 서양사학과)
홍효창(미국 마샬대 언어학과)
황미아(대만대 대만문학연구소)

인문연구　제95호

2021년 6월 25일 인쇄
2021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 최 외 출

발행처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Tel : 053-810-3701
Fax : 053-810-4691

인쇄처 : 영한문화사(Tel: 053-254-0209)